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2018.12.1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준호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8-106
----------	--------

2018. 12. 10.  
전문위원 신준호

### 1. 안건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23일(목), 마포구청장

###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7일(월)

###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5. 제출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자동실효(2020.7.1 부터)와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해제 추진 및 존치시설에 대하여 자동실효를 대비하고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 대상시설 현황 : 총 17건(구 설치의무시설, 2018. 10월기준)

구분	합계	장기미집행		
		소계	도로	공원
건수	17	17	13	4
면적(m <sup>2</sup> )	271,787	271,787	113,911	157,876
사업비(억원)	2,050	2,050	590	1,460
보상비(억원)	1,938	1,938	548	1,390

2) 사업부서의 해당시설 해제에 관한 의견

구분	합계	존치 시설			해제 시설	
		소계	도로 (장기)	공원 (장기)	소계	도로 (장기)
건수	17	14	10	4	3	3
면적(m <sup>2</sup> )	271,787	261,787	103,911	157,876	10,000	10,000
사업비(억원)	2,050	2,050	590	1,460	-	-
보상비(억원)	1,938	1,938	548	1,390	-	-

※ 도로(토목과) : 도로의 연계성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없는 **3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폐지검토**

## 7. 검토의견

-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마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임.

- 현재 마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3개소, 공원 4개소, 총 17개소로서 추정사업비가 2,050억원임.
- 의견청취 내용은 총 17개소 중 3개소(도로 3)는 해제하고 14개소(도로 10, 공원 4)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해제 시설은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우선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및 비재정적 집행방안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에 따라 해제하여야 하나, 금번 해제 대상 시설은 장래계획 미도래 및 이용자 저조, 재개발·재건축사업과의 중복 및 현재 도로기능의 문제가 없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사유로 해제하고자 하는 것임.
- 존치 시설의 경우 구민의 생활환경에 필요한 교통, 휴식공간 등의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사유로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된다는 점에서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